

#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11
----------	------

제출년월일 : 2015.10.15.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3192(2015.2.26.)호로 시행된 '시·군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촉구' 공문 취지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 건축법 개정(시행일 : 2014.11.29.) 취지에 부합하게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우리시 건축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I.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조례 정비(경기도)

1.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 촉진을 위해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을 120% 완화(안 제4조의2)
2. 미관지구 내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와 편차가 있어, 당초 미관지구 내 15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만 심의에서 제외하였으나,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8조제2항)
3. 응급 및 임시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중 국민건강진흥을 위해 설치되는 야외흡연실 허용(안 제20조제2항제4호)
4.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의 필요성 및 향후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공개공지 확보대상을 구체적으로 용도 선정(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제2

종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여 명확화 함  
(안 제26조제1항)

5.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나, 차량통행이 적은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의 접도의무 완화가 필요하여 접도 의무 완화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6.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로 일조권 적용제외가 가능하므로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비용 절감을 위해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완화 규정을 신설함(안 제32조제7항)

## II.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인용조문 수정

7.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신설(안 제11조의2)
8.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을 확대(연면적 5천제곱미터→1천제곱미터)하여 공사장 안전휀스 등 안전조치,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안 제17조제1항)
9. 건축법 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범위 확대(건축신고 포함)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변경[안 제22조제1항제1호, 제3항(별표2 포함)]
10.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령 삭제 반영(안 제31조)
11. 현행법령 인용조문 등 불일치 수정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일부 변경(안 제16조)
  - 조례 조항 일부 변경(안 제18조)

- 개정조례안 : 불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5. 9. 11. ~ 2015. 10. 1.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불임4
  - 방침결정문 : 불임5

## < 블임 1 >

#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제8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4조에” 를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에”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4항 및 제7항과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중 “운영 등은 「안산시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5천제곱미터” 를 “1천제곱미터” 로 하고, “할 수 있다” 를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야외흡연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 제16조” 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고하는” 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을 “위락시설(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제2종 균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를 말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신고)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소관 실·과		건축과
임 안 자		
	실·과장	건축과장
	직위·성명	김 경 수
	담당·팀장	건축행정계장
	직위·성명	변 성 육
	담당자	임정민
	성명·전화	(행정 2914)

[별표 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제22조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8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12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20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24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2시간

\*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당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1일 8시간)에 8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백원단위 이하는 버림)으로 한다.

## < 불임 2 >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신설)	<p>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li> <li>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li> <li>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li> </ol>
제8조(기능) ①(생략) ② 생략 1. 15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상에 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6.(생략)	<p>제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상에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li> <li>~6. (현행과 같음)</li> </ol>
제11조의2(신설)	<p>제11조의2(전문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li> <li>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li> <li>제6조제4항 및 제7항과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li> </ol>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안산시 민원사무	<p>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p>

<p><u>처리 규정</u> 제14조를 준용한다.</p>	<p>규칙으로 정한다.</p>
---------------------------------	------------------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착공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p> <p>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략)</p> <p>② 제1호~3호 (생략)</p> <p>4. (신설)</p> <p>③ 생략</p> <p>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략)</p> <p>1. 법 제11조,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기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p> <p>2. (생략)</p> <p>3. (생략)</p> <p>② (생략)</p> <p>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p> <p>④ (생략)</p>	<p>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착공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p> <p>제20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호~3호 (현행과 같음)</p> <p>4.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야외흡연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p> <p>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기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이하 “<u>공개공지등</u>”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탁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p> <p>②~⑥ (생략)</p> <p>제2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신설)</p> <p>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② (생략)</p> <p>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⑥ (생략) ⑦ (신설)</p>	<p>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이하 “<u>공개공지등</u>”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탁시설(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제2종 균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p> <p>②~⑥ (생략)</p> <p>제2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 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를 말한다.</p> <p>제31조(삭제)</p> <p>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현

## 행

## 개정안

[별표2]

[별표 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제22조 관련)

검사대행 전축률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8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12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20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24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2시간

\* 해당 전축률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당해 낸도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 단가(1일 8시간)의 8분의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백원단위 이하는 버림)으로 한다.

[별표2]

[별표 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제22조 관련)

검사대행 전축률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8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12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20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24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2시간

\* 해당 전축률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당해 낸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술사 노임 단가(1일 8시간)에 8분의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백원단위 이하는 버림)으로 한다.

#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2711
------------	------

제안년월일 : 2015년 10월 29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회

## □ 수정이유

- 「안산시 건축 조례」는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취지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조문 등을 수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안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를 수정함.

##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1항을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 신고”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허가”를 “건축허가, 건축신고”로 수정한다.

안 제26조제1항 중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제2종 균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를 “(다만, 제2종 균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로 수정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 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 제16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li> <li>2. (생략)</li> <li>3. (생략)</li> <li>② (생략)</li> <li>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 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li> <li>④ (생략)</li> </ol>	<p>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 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② (현행과 같음)</li> <li>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 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신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li> <li>④ (현행과 같음)</li> </ol>	<p>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 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② (현행과 같음)</li> <li>③ (개정안과 같음)</li> <li>④ (현행과 같음)</li> </ol>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탁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p> <p>②~⑥ (생략)</p>	<p>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탁시설(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제2종 균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p> <p>②~⑥ (현행과 같음)</p>	<p>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탁시설(다만, 제2종 균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p> <p>②~⑥ (현행과 같음)</p>